#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56 발의연월일 : 2021. 5. 12.

발 의 자:조응천·한준호·조승래

송기헌 · 임종성 · 김영진

최인호 · 김철민 · 양정숙

홍기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 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9년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나 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월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사람이 기계 없이 해석 및 식별이 불가한 전자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도등에 관한 간행심사는 사람이 지도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오래 걸려 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 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제15 조의2,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9조).

#### 법률 제 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밀도로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가 신청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정밀도로지도의 지형·지물의 표시 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밀도로지도의 사본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의 수정사항에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분기별로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밀도로지도의 범위, 심사기준·절차 등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및 정밀도로지도의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1 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 한 지도등의 간행) ①・② (생 한 지도등의 간행) ①・② (현 행과 같음) 략)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 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 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 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 -----제외한다. 이하 이 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 |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신 설>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자율 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의한 "정밀도로지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사하 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가 신청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정밀도로지도의 지형·지물의표시 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밀도로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의 수정사항에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분기별로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정밀도로지도의 범위, 심사 기준·절차 등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및 정밀도로지도의 수정 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2) -----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 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 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_\_\_\_\_\_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 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제106조(수수료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1. • 2. (현행과 같음)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내야 한다.

1. • 2. (생 략)

- 3. <u>제15조제3항</u>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 4. ~ 18.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u>제15조제3항</u>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 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